

영등포구의회
제 141 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8. 11. 6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2008년 10월 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첩·시달되어 단순 조문 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을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「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」(2006.12. 법제처)에 따라
 - “각 호의 1”을 →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정비
 - “내지”를 → “~부터 ~까지”로 정비
- 임대주택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(안 제8조)
 - 「임대주택법」(전부개정 법률 제8966호, 2008.3.21) 및 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(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0849호, 2008.6.20)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

-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(안 제13조)
 -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,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'주거용 부동산'을 '주택'으로 일괄 정비

-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(안 제14조)
 -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개정(법률 제7558호, 2005.5.31)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

-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 정비(안 제16조)
 -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,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 명확화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단순 조문 정비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법제처에서 2006년 시달된 “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”에 따라 조문내용 중에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
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8조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정할 경우 추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이며

- 안 제13조는 「지방세법」 제180조(정의) 등에서 건축물과 토지 외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,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면조례상의 “주거용 부동산”을 “주택”으로 일괄정비하려는 것이며
- 안 제14조는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개정에 따라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인용조문 수정하려는 것이며
- 안 제16조는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당초 감면취지와 달리 비영업용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, 근거법명 및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
●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구세감면 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수용한 조례안과 조문 중에 지금까지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“각호의 1”을 “각호의 어느 하나”로 “내지”를 “~부터~까지”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8. 11. 6.

보 고 자 : 권 오 윤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세법

제3조 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 <개정 1998.12.31>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 課稅客體, 課稅標準, 稅率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. <개정 1998.12.31>

② 삭제 <1988.4.6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 (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)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不適當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.

제9조 (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

<개정 1978.12.6, 1998.12.31, 2008.2.29>